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등록말소) 공문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이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8. 8.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시공달 대상 업체

업체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처분근거	처분내용
이룸토건(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순천2016-02-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순천2015-09-02)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72, 503호 (가정동, 대건프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등록말소

2. 공고기간 : 2024. 8. 8. ~ 2024. 8. 23.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시장 또는 온라인(<http://incheon.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032-560-4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